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신장식 · 황운하
박은정 · 김준형 · 정춘생
차규근 · 서왕진 · 최혁진
강경숙 · 이해민 · 김재원
송기현 · 전종덕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.

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등).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시설기준 및 기술기준”을 “기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명 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) (생략)	제11조(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)
<u><신설></u>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	②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제16조(안전진단의 실시) ① (생략)	제16조(안전진단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기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